

접 수	의안과 - (20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6년 1월 28 일

청 원 인

성 명 : 김민기

주 소 :

전화번호 : 없음 (휴대전화 :)

소 개 의 원 : _____ (인) 외 _____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성명 : 김 민 기
건명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소개년월일	2016년 1월 28일
<p>소개의견</p> <p>청원인 김 민기는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입니다.</p> <p>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2016년 1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 중 의결된 안건 하나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입니다.</p> <p>대한민국청소년의회에서 의결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익신고자중 내부 공익신고자 쉽게 말해 내부 고발자의 개인정보가 보복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안“ 하는 것입니다.</p> <p>공익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장 12조 1항 아래를 아래와 같이 추가 하여 개정한다.</p> <p>-담당기관에서는 공익신고가 들어왔을 때, 담당기관이 판단하기에 해당 사건을 조사해야한다는 판단이 들기 전 까지 공익신고가 접수 되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 보도 하여서는 안 된다.</p> <p>이로 인해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기간 동안 적절한 조치를 내림으로써,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만약 허위신고일 경우에도 집단의 이미지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p> <p>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3장 제 12조)</p> <p>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담당기관에서는 공익신고가 들어왔을 때, 담당기관이 판단하기에 해당 사건을 조사해야한다는 판단이 들기 전까지는 공익신고가 접수 되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5.7.24.></p> <p>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p> <p>⑤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24.></p> <p>[시행일 : 2016.1.25.] 제12조</p>	

청원서

1. 제안이유

일명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8명의 교직원·교사가 청각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해 크게 논란이 되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내부고발 때문이었다.

2014년 7월, 8년간의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박 씨는 후배 학생이 A교수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교내 성폭력대책위원회에 가해교수를 신고했다. 학교는 일주일 만에 가해교수를 해임했지만, 사건 이후, 학교 측은 강사 계약기간이 끝난 박 씨와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성추행 피해자 또한 학교를 떠나야 했다. 그런데 학교 내에선 내부 고발자 박 씨가 교수 자리를 노리고 가해교수를 음해한 것이라는 소문과 피해 학생이 '돈을 노린 꽃뱀'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2016년 1월 25일 개정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보호대상 법률을 180개에서 279개로 확대했지만 그들은 아직까지도 조직 내 왕따, 보복성 해고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처럼 이런 보복성 피해 사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하고 싶어도 신고를 하지 못한다. 우리는 내부 고발자들의 신원을 일체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체적인 관련 정보제공 차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법안이 필요하며, 기존의 법안을 보완하기 위해 이하의 법률안을 제안한다.

2. 주요골자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담당기관에서는 공익신고가 들어왔을 때, 담당기관이 판단하기에 해당 사건을 조사해야한다는 판단이 들기 전까지는 공익신고가 접수 되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 ⑤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

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시행일 : 2016.1.25.] 제12조

■ 선구문 대조

현행 법안	개정문
<p>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p> <p>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5.7.24.></p> <p>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p> <p>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24.></p> <p>[시행일 : 2016.1.25.] 제12조</p>	<p>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p> <p>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u>담당기관에서는 공익신고가 들어왔을 때, 담당기관이 판단하기에 해당 사건을 조사해야한다는 판단이 들기 전까지는 공익신고가 접수 되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③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5.7.24.></p> <p>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p> <p>⑤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24.></p> <p>[시행일 : 2016.1.25.] 제12조</p>

청원인 성명

청원인 주소 :

청원인 전화번호 :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청원제출서류 기재요령

1. 청원제출서류는 청원제출용지,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서 각각 3부씩(이중 2부는 사본)이며,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청원제출용지

- ① 「제목」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하되 간략하게 정해 주십시오.
- ② 「청원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란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날인」란에는 대표자의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외 청원인은 인원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성명 :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길동 (인) 외 24인(법인)

- ③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이면 가능하며 별첨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시켜야 합니다.
- ④ 의원인장은 사무처 총무과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청원소개의견서

- ① 청원소개의견서는 당해 청원을 소개하는 국회의원이 작성합니다.
- ② 「소개의견」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

4. 청원서

- ①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의 표지나 말미에 청원인의 주소, 전화, 성명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구성에 있어 청원제목, 취지,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 ②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는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별첨의 청원인 서명날인부와 소개의원 서명날인부에 기재 및 날인하여 주십시오.
- ③ 청원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정부공문서 용지의 기본규격인 에이4(A4)규격(가로210mm, 세로297mm)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